

[서식 예] 가압류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가압류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 ○○. 접수 제○○호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소외 ◈●◈와 소외 ●●●의 공동소유(공유지분 각 2분의 1)인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20○○카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 ○○.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가압류기업등기(1)가 되었으며, 피고는 위 가압류기업등기(1) 이후인 20○○. ○○. 같은 법원 접수 제○○ ○○. 같은 법원 접수 제○○ ○○호로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2. 그런데 ○○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은 소외 ●●●의 채권자 소외 ◎◎◎가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신청한 ○○지방법원 20○○카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20○○. ○○.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기입된 가압류등기(2)의 말소등기촉탁을 받고 착오로 원고가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신청한 ○○지방법원 20○○카단○○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기입된 같은법원 접수 제○○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 3. 그러므로 원고는 ○○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 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 신청을 하고 자 하는바,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규정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압류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1부1. 소장부본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1.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대 ㅇㅇㅇm².
- 2.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제28조의 2 제1항).

※ 가압류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회복등기의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 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신청 할 수 있고, 등기공무원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 178조가 정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59조), 위 소장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청구하는 소장임.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